

#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23

검사 지침

Guidelines for inspection

(2005)

FAO/IPPC 사무국

인용 시 요구되는 문구:

FAO. 2005. *Guidelines for inspection*.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23. Rome.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2005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 산물(work)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ical-ShareAlike 3.0 IGO licence (CC-BY-NC-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legalcode>)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 산물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사, 재배포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산물의 사용에 있어서 FAO가 특정 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어떤 시사(suggestion)도 있어서는 않된다. FAO의 로고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산물이 적용된다면, 동일 또는 동등한 Creative Commons licence 하에서 허가(licensed)를 받아야만 한다. 이 산물의 번역이 수행된다면, 필요한 인용과 더불어 다음의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번역은 UN FAO가 수행한 것이 아니다. FAO는 번역의 내용이나 정확함에 책임이 없다. 원 영어본이 원본 ‘authoritative edition’이 되어야 한다.”

이 라이선스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발생은,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8항에서 설명된 중재와 조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amc/endml> 조정 규칙이고, 조정은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제삼자 자료.** 표, 그림 또는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제3자에 제공되도록 (attributed)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산물의 제삼자가 소유한 요인의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청구(claim)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판매, 권리와 licensing.** FAO 정보물은 FAO 웹사이트 ([www.fao.org/publications](http://www.fao.org/pub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고, [publication-sales@fao.org](mailto:publication-sales@fao.org)를 통하여 구매 가능하다. 상업적 사용 요청은 [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http://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권리와 licensing 관련 질문은 [copyright@fao.org](mailto:copyright@fa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http://www.ippc.i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 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 목적을 위하여 인용되는 IPS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3 (한국어 번역)"

"© FAO, 1995–2005 (영문판)"

## 출간 이력

이 부분은 본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님

1994-05 CEPM-1이 검사 주제를 추가 (1994-006)

1995-05 IPPC 사무국이 초안을 검토

1996-05 CEPM-3이 EPPO에 검토 의뢰

1997-10 CEPM-4가 초안을 검토

1998-05 CEPM-5가 초안을 검토하고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1999-05 CEPM-6가 초안을 논의하고 전문가작업단에 의해 재작성되도록 동의

2001-04 ICPM-3이 보류되고 있는 높은 우선순위 주제를 인지

2002-03 ICPM-4가 초안 작성을 완료할 높은 우선순위 주제를 인지

2003-04 ICPM-5가 개발 중인 높은 우선순위 주제를 인지

2004-03 전문가작업단이 초안 작성

2004-04 SC가 초안을 검토하고 회원국 의견수렴 승인

2004-06 회원국 의견수렴 실시

2004-11 SC가 채택을 위하여 초안을 검토

2005-04 ICPM-7이 기준을 채택

**ISPM 23.** 2005. 검사 지침. 로마, IPPC, FAO

2013-08 IPPC 사무국은 CPM-8(2013)에서 인지된 소소한 수정을 반영

2015-03 CPM-10은 “식물위생 상태(tphytosanitary status)” 관련 소소한 수정을 인지함

2015-06 사무국은 소소한 수정을 반영하고 CPM-10(2015)에서 결정된 기준 절차 폐지에 따라 기준을 변경(reformatted)함

2019-04 “오염”와 관련 용어에 대한 소소한 수정을 CPM-14이 인지하고 IPPC 사무국이 반영함

출간 이력은 최종으로 2019-04에 업데이트됨

## 차례

채택

서론

범위

참고문헌

정의

요건의 개요

요건

### 1. 일반 요건

- 1.1 검사 목적
- 1.2 검사를 실시하는데 포함된 가정
- 1.3 검사의 책임
- 1.4 검역관에 대한 요건
- 1.5 검사에 대한 기타 고려 사항
- 1.6 병해충위험분석과 관련된 검사

### 2. 특정 요건

- 2.1 화물 관련 문서 검토
- 2.2 화물의 아이디와 보전성(integrity) 확인
- 2.3 육안 조사
  - 2.3.1 병해충
  - 2.3.2 식물위생 규정 준수
- 2.4 검사 방법
- 2.5 검사 결과
- 2.6 검사 시스템 검토
- 2.7 투명성

## 채택

이 기준은 2005년 4월 제7차 ICPM에서 채택되었다.

## 서론

### 범위

이 기준은 수입 수출 시, 식물, 식물성 산물과 기타 규제물품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위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육안조사, 문서 확인 및 아이디과 보전성 확인에 근거한 식물위생 규정의 준수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은 국제식물위생 포탈(IPP) [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http://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에서 찾을 수 있다.

IPPC. 1997. 국제식물보호협약. 로마, IPPC. FAO.

###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들의 정의는 ISPM 5에서 찾을 수 있다.

### 요건의 개요

국가식물보호기관(NPPOs)은 “특히 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 수송에서 이동되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 화물의 검사와 적절한 경우, 다른 규제물품의 검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IPPC IV.2(c)).

검역관은 병해충과 규제물품을 검출하기 위한 육안 조사와 문서 확인 및 아이디와 보전성 확인에 근거하여, 화물의 식물위생 규정 준수를 결정

한다. 검사 결과는 검역관이 그 화물을 합격, 유치(detain) 또는 불합격 여부 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NPPOs는 검사하는 동안 화물이 시료채취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사용되는 시료채취 방법은 특정 검사 목적에 따라야 한다.

## 요건

### 1. 일반 요건

NPPOs의 책임은 “특히 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 수송에서 이동되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 화물의 검사와, 적절한 경우, 다른 규제물품의 검사”(IPPC IV.2(c))를 포함한다.

화물은 하나 이상의 품목 또는 더미로 구성될 수도 있다. 화물이 하나 이상의 품목 또는 더미일 경우, 준수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여러 개의 분리된 육안 조사로 구성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 기준에서 “화물(consignment)”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화물에 대해 제공되는 지침은, 하나의 화물 내에서 더미 각각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1.1 검사 목적

화물에 대한 검사의 목적은, 검역병해충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과 관련된 수출입 요건의 준수 확인이다. 종종 검사는 이전 단계에서 적시에 행해진 여타 식물위생조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수출 검사는, 검사 당시 해당 화물이 수입국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부합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화물에 대한 수출 검사는 해당 화물에 대한 식물위생증명서의 발행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수입 시 검사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에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식물위생 위험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생물체에 대한 검출을 위해 검사가

일반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또는 병해충 종류(identity) 확인은 검사 절차와 조합될 수도 있다.

검사는 하나의 위험관리 절차로 사용될 수 있다.

## 1.2 검사를 실시하는데 포함된 가정

전체 화물에 대한 검사는 종종 이행 가능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식물위생 검사는 시료채취에 근거한다<sup>1</sup>.

병해충의 존재 검출 또는 병해충 발생정도(incidence)를 판단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검사의 이용은, 화물이 다음과 같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 우려 병해충 또는 이들이 일으키는 표징 또는 병징이 육안으로 검출 가능함.
- 검사가 운영상 실용적임.
-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는 어떤 확률이(probability) 인정됨 (recognized).

검사가 사용되었을 때,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어떤 확률이 있다. 보통 이는 검사가, 더미나 화물에 대한 100%의 육안 조사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료채취에 근거하기 때문이며, 또한 검사는 조사되는 화물이나 시료에서 특정한 병해충을 검출하는데 100%의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가 하나의 위험관리 절차로 사용될 때, 화물이나 더미에 있는 어떤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특정 확률이 또한 있다.

검사를 목적으로 한 시료의 크기는, 통상 특정 품목과 관련된 특정 규제 병해충을 토대로 결정된다. 화물에 대한 검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 병해충 또는 모든 규제병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료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sup>1</sup>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은 ISPM 31 (화물의 시료채취 방법론)

## 1.3 검사의 책임

NPPOs는 검사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NPPOs에 의해 또는 그들의 권한 하에 실시된다(ISPM 7 (식물위생증명 시스템), ISPM 20,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 IPPC IV.2(a), IV(c), V.2(a)).

## 1.4 검역관에 대한 요건

NPPOs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officers) 또는 대리인(agents)으로서, 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자기의 의무를 수행할 권한 및 자기의 활동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 특히 병해충 검출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자격과 능력
- 병해충, 식물과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 또는 능력에의 접근
- 적절한 검사 시설, 도구 및 장비에 대한 접근
- 서면으로 작성된 지침(규정, 매뉴얼, 병해충 데이터 시트)
- 적절한 경우, 여타 규제 기관(agency)의 운영에 대한 지식
- 객관성과 공정성

검역관은 다음을 위하여 화물을 검사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다:

- 특정 수출입 요건 준수
- 특정 규제병해충
- 아직 식물위생 위험이 결정되지 않은 생물체

## 1.5 검사에 대한 기타 고려사항

하나의 식물위생조치로서 검사를 이용하기 위한 결정은, 특히 수입국의 식물위생 수입요건과 우려 병해충을 포함한 많은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고려가 필요한 다른 요소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도 있다:

- 수출국에 의해 취해진 경감 조치(mitigation measures)
- 검사가 유일한 조치인지 또는 다른 조치와 결합되는지 여부
- 품목 및 용도

- 생산 장소/지역
- 화물 크기와 배치(configuration)
- 선적 물량, 빈도 및 시기(timing)
- 원산지/해운회사(shipper)와의 경험
- 운송 수단 및 포장재
- 가용한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인 자원(병해충 진단 능력을 포함하는)
- 이전의 취급 및 가공
-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료채취 설계 특성
- 특정 품목에서 병해충 검출의 어려움
- 이전의 검사에 대한 경험 및 결과
- 품목의 부패성(IPPC VII.2(e) 참조)
- 검사 절차의 유효성

## 1.6 병해충위험분석과 관련된 검사

병해충위험분석(PRA)은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대한 기술적인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PRA는 식물위생조치가 필요한 규제병해충 목록을 개발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어떤 검사가 적절한지 또는 검사 대상인 품목을 확인한다. 만일 새로운 병해충이 검사하는 동안 보고되면, 적절한 경우 긴급활동이 취해질 수도 있다. 긴급활동이 취해졌을 때, PRA는 이들 병해충을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추가의 활동의 권고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관리의 방안으로서, 그리고 식물위생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검사를 고려할 때, 검사의 특정 유형 및 강도와 관련된 기술적·운영상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검사는 특정 병해충과 관련된 위험에 따라, 희망하는 수준(desired level)과 신뢰도에서 특정 규제병해충을 검출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ISPM 11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 분석) ISPM 21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참조).

## 2. 특정 요건

검사를 위한 기술적인 요건은, 운영상의 실용성도 고려하면서 기술적인 정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3가지의 별도의 절차를 포함한다:

- 화물과 관련된 문서 검토
- 화물의 아이디와 보전성 확인
- 병해충과 여타 식물위생 요건(흙이 없어야 하는 것 같은)에 대한 육안 조사

검사의 어떤 측면은 수입/수출 목적 또는 확인/위험 관리 목적과 같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 2.1 화물 관련 문서 검토

수입 및 수출 문서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 완전한
- 일관된
- 정확한
- 유효하며 부정하지(fraudulent) 않은(ISPM 12(식물위생증명서들))

수입 및 수출 증명과 관련될 수도 있는 문서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재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증명서
- 적하목록(manifest)(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invoice) 포함)
- 수입 허가서
- 소독처리 문서 또는 증명서, 마크(ISPM 15(국제 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 규제)에서 제공된 것 같은) 또는 소독처리의 다른 표시
- 원산지 증명서
- 포장(field) 검사 증명서 또는 보고서
- 생산자 또는 포장(packing) 기록
- 증명 프로그램 문서(예: 씨감자 증명 프로그램, 병해충무발생 지역 문서)
- 검사 보고서
- 상업 송장
- 실험실 보고서.

수입 또는 수출 문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적절한 경우,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문서를 제공한 당사자들과 함께 우선 조사(investigated)되어야 한다.

## 2.2 화물의 아이디 및 보전성 확인

아이디와 보전성에 대한 검사는, 해당 화물이 그 문서에 의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점검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디 점검은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의 유형 또는 종(species)이, 접수된 혹은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보전성 점검은 화물이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수량과 상태가 접수된 혹은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식물위생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선적 물의 봉인, 안전 조건 및 기타 적절한 물리적 측면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아이디와 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에 대한 물리적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 결과에 근거해서 취해진 조치는 발생된 문제의 범위나 성격에 좌우될 것이다.

## 2.3 육안 조사

육안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병해충 검출과 식물위생 규정의 준수 확인을 위한 조사의 사용을 포함한다.

### 2.3.1 병해충

병해충이 존재하는 가, 또는 특정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화물 또는 더미로부터 시료를 추출한다. 희망 신뢰수준으로 규제병해충 존재를 일관된 방식(manner)으로 검출하기 위한 능력은, 병해충 검출 확률, 더미를 구성하는 단위의 수, 원하는 신뢰수준 그리고 시료 크기(즉, 검사 강도)와 같은 실질적이고 통계적인 고려를 필요로 한다(ISPM 31 (화물의 시료채취 방법론) 참조).

만일 검사의 목적이,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 규제병해충의 검출이라면, 시료채취 방법은 해당 식물위생 요건을 충족하는 병해충 검출

확률에 근거해야 한다.

검사의 목적이 다음과 같은 화물 또는 더미의 일반적인 식물위생 상태의 확인에 있다면, 시료채취 방법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 규제병해충이 특정되지 않음
- 규제병해충에 대해 허용수준이 특정되지 않음
- 그 목적이 식물위생 조치의 실패가 있었던 병해충을 검출하고자 할 때

채택된 시료채취 방법은 투명한 기술적이고 운영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ISPM 20 참조).

### 2.3.2 식물위생 규정 준수

검사는 식물위생 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소독처리
- 가공 정도
- 오염이 없음(예 : 잎, 흙)
- 요구되는 생장 단계, 품종, 색, 연령, 성숙도(degree of maturity) 등
- 허가되지 않은 식물, 식물성 산물 혹은 기타 규제물품이 없음
- 화물 포장재 및 선적 요건
- 화물 또는 더미의 원산지
- 반입항

## 2.4 검사 방법

검사 방법은 조사를 받는 품목 외부 또는 내부에서(on or in) 특정 규제병해충을 검출하기 위해, 또는 아직까지 식물위생 위험이 결정되지 않은 생물체를 위한 일반적 검사에 이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검역관은 대상 병해충 또는 다른 병해충이 검출될 때까지, 또는 조사된 모든 시료 단위를 육안 조사한다. 그 시점에서 검사가 종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병해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포장이나 병징이 있는 경우 같이, NPPO가 우려하는 병해충과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적인 시료

단위가 조사될 수도 있다. 또한 검역관은 검사 과정과 결합하여 기타 비육안 도구에 접근할 수도 있다.

다음이 중요하다:

- 시료에 대한 조사는, 시료가 채취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실시되고, 그 시료는 가능한 한 화물 또는 더미를 대표함
- 기술적으로 획득된 경험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기술을 검토함
- 절차는 각 화물 또는 더미의 시료에 대한 독립성, 보전성, 추적 가능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됨
- 검사의 결과는 문서화됨

검사 절차는, 적절한 경우 PRA에 따라야 하며,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 2.5 검사 결과(outcome)

검사의 결과는 화물이 식물위생 규정에 부합되는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한다. 만일 식물위생 규정이 충족된다면, 수출용 화물은 식물위생증명서와 같은 적절한 증명이 제공될 수도 있으며, 수입용 화물은 합격되어야 한다.

만일 식물위생 규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활동이 취해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규제병해충 혹은 기타 검사 목적 및 여건을 고려하여 발견 사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ISPM 20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많은 경우, 검출된 병해충이나 병해충 표징은, 실험실에서 혹은 전문가에 의한 동정이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새로운 또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될 수도 있다. 표본이나 시료를 적절히 문서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관련 화물에 대한 추적을 보장하고, 필요시 그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반복적인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다른 활동들 중에서 특정 화물에 대한 검사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될 수도 있다.

어떤 병해충이 수입 시 검출된 경우, 검사 보고서는 위반사항 통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술되어야 한다(ISPM 13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 지침)에 따라). 또한, 기타 기록유지 요건은 적절하게 완성된 검사 보고서의 존재에 좌우될 수도 있다(예, IPPC VII, VIII, ISPM 8 (특정 지역에서의 병해충 상황 결정), ISPM 20).

## 2.6 검사 시스템 검토

NPPOs는, 설계의 적합성을 유효하게 하고, 기술적으로 건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 과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입 및 수출 검사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검사는 감사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 2.7 투명성

검사 절차의 일부로서 어떤 품목에 대한 검사 절차에 관한 정보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투명성 원칙의 적용 상, 요청 시 가용하도록(made available) 한다 (ISPM 1 (국제 교역에서 식물보호와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을 위한 식물위생 원칙)). 이 정보는 품목 교역의 식물위생 측면을 다루는 양자 협정의 일부일 수도 있다.